

	방화 관리 규정		문서번호	3-1-22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12. 11. 01.	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서의 방화 및 위험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규정의 준수) ① 본 대학의 교직원(계약직, 축탁직 포함)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본 대학에서 영업을 하는 임대업체 및 용역업체의 해당 주관부서에서 계약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 장 방화관리 조직 및 업무

제3조(조직) ① 본 대학의 방화 및 위험물 총책임자는 총장이 되며, 직원 중 과장이상의 방화관리책임자를 둔다.

② 방화 및 위험물 총책임자는 관계법령에 준한 자격을 갖춘 해당 분야 실무자들을 선임하여 방화관리자, 위험물관리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.

③ 일과시간외 및 공휴일에 있어서는 당직자가 방화관리책임자가 되며, 각 건물의 화기사 용관리책임은 경비원이 진다.

④ 일과시간이 지난 후의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관리 책임은 당해 시설 사용자에게 있다.

⑤ 방화 및 위험물관리 업무는 사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.

제4조(방화 및 위험물관리총책임자의 임무) 총장은 방화관리책임자를 지휘, 통솔하며 방화관련업무의 책임을 진다

제5조(선임방화관리자, 선임위험물관리자의 임무) ① 선임방화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화관리총책임자의 임무 보좌
2.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
3.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사항

② 선임위험물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험물관리총책임자의 임무 보좌
2. 관계법령에 따른 제4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 수행

	방화 관리 규정	문서번호	3-1-22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12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6조(방화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임무) 방화관리업무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
2. 시설 및 소화기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훈련
3.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사항의 집행

제 3 장 교육 및 훈련

제7조(교육 및 훈련) ① 본 대학의 교직원(촉탁직 및 계약직 포함)은 자체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.

② 정기 교육은 연 1회로하고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.

③ 방화관리총책임자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전문인을 외부로부터 초빙할 수 있다.

제8조(자위소방대의 편성) ① 화재의 발생 및 재해로부터 상응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용한다.

② 당직책임자는 방화관리총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전항의 자위소방대를 동원할 수 있다.

제 4 장 준 용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